##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0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 임이자 · 이종배 · 유용원

김승수 · 고동진 · 최은석

우재준 · 김위상 · 박성훈

조승환 • 안호영 • 신성범

윤건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7,936여명의 광부와 약 1만 1,057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1.8%에 이르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획

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국민소득 증가 등투자증대를 가지고 오는 한편, 서독 등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주거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회적 교류가 미비하여 가족과 친지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폐증과 진폐 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등 지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 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파독 광부·간호사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의하여 파독되었으므로 기술습득과 임금

-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제3조제1항제4호·제5호 신설).
- 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 법률 제 호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임금"을 각각 "기술습득 및 임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5. 주거지원금

제6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	제2조(지원대상)
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1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	
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	
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	
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	
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u>7]</u>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u> 술습득 및 임금</u>
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	2
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	
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	
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	
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u>임</u>	<u>7]</u>
<u>금</u>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u> 술습득 및 임금</u>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	①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6조(업무의 위탁) <신 설>

이 법에 따른 <u>고용노동부장관</u>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5. 주거지원금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u>위임·위탁</u>)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_\_\_\_\_